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차수 적용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② 울산광역시 ○구 ○○소 지방○○○○○ ○○○

③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3. 1. 14.부터 2015. 7. 9.까지 및 2016. 7. 1.부터 현재까지, 지방○○○○○ ○○○는 2008. 2. 26.부터 2016. 7. 13.까지, 지방○○○○○ ○○○는 2015. 12. 4.부터 현재까지 ○구청 ○○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주점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 따른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I.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²⁾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 등의 관서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 동일 행정처분이력 등을 확인·검토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년 이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구청(○○과) 지방○○○○○ ○○○, 지방○○○○○ ○○○, 지방○○○○○ ○○○는 아래 [표]와 같이 성매매 알선 금지 규정 위반으로 관할 경찰로 부터 1차(2014. 2. 27.) 및 2차(2015. 11. 13.)에 걸쳐 통보받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 단란주점’(대표 ○○○)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여야함에도 기준과 다르게 1차 영업정지 2월 15일, 2차 영업정지 3월 15일의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차수적용 부적정 현황

업소명 (대표자)	위반내용	적발일 (대표자)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감사 확인
○○ 단란주점 ³⁾ (○○○)	유흥접객행위, 성매매알선	‘14. 2.27	‘14. 5. 8	영업정지 2월 15일	성매매 적발(경찰), 처분부적정
	유흥접객행위, 성매매알선	‘15.11.13	‘16.12.26	영업정지 3월 15일	3년 이내 재적발 될 경우 허가 취소 대상 임에도 행정처분 유보 후 처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2) 성매매 위반으로 1년 이내 재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었으나, 행정처분기준 개정(2014. 5. 9)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허가취소 대상

3)2014.12.30. ○○단란주점(대표 ○○○)은 ○○○(대표 ○○○○)로 변경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